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07

발의연월일: 2024. 10. 29.

발 의 자: 박선원·조정식·박민규

이수진 • 박지원 • 노종면

오세희 • 추미애 • 강준현

김영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분 안정성으로 인한 무사 안일 방지, 원활한 인력 순환을 통한 조직 활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하여 '계급 정년'을 두고 있고, 특정직직원 계급 정년의 경우 2급 직원 5년, 3급 직원 7년, 4급 직원 12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3·4급 직원의 경우 연령 정년에 비해 계급 정년이 과도하게 짧아 우수한 인적 자원이 조기에 소실되고, 정보기관 본연의 역량이 약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지나치게 짧은 계급정년은 퇴직 직원에 대한 처우 문제로도 직결됨. 국정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2급 직원의 경우 평균 57.1세, 3급은 56.3세, 4급은 55.4세에 계급정년으로 퇴직하고 있음. 2021년 이후 퇴직하는 공무원의 경우, 만 60세가 넘어야 공무원 연금 수급이 가능한만큼. 계급정년을 맞이한 국정원 직원들은 퇴직 후 약 3~5년가량을 별도 연금 수급 없이 생활해야 하는 문제가 존재하는 것임.

이에 국가정보원직원들이 안정적 근무여건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2·3·4급 특정직직원 계급 정년을 연장하고자 함(안제22조제1항제2호).

법률 제 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가목 중 "5년"을 "6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7년"을 "8년"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12년"을 "13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직직원의 계급 정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호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2급, 3급, 4급의 특정직직원에 대하여서 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제22조(정년) ①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정직직원의 계급 정년	2		
가. 2급 직원: <u>5년</u>	가 <u>6년</u>		
나. 3급 직원: <u>7년</u>	나 <u>8년</u>		
다. 4급 직원: <u>12년</u>	다 <u>13년</u>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